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찬 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3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13일

발 의 자 : 유찬중 의원(1명)

찬 성 자 : 장흥순, 김정태, 이윤희
우창운, 유동균, 김제리,
박진형, 박운기, 김광수(도봉)
의원(9명)

1. 제안이유

2017.12.26.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안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를 “부합하고, 법 제 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 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 6. 27.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u>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u></p> <p>③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 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u></p> <p>① <u>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u> <u>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u> <u>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u>

현 행	개 정 안
	<p><u>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u></p> <p><u>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u></p> <p>② <u>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u> <u>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 센터</u> <u>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u> <u>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u> <u>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u>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 6. 27.부터 시행한다.</p>